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성인편



Contents



1. 디지털성폭력

- 1-1 정의와 사례현황
- 1-2 디지털성폭력의특성
- 1-3 피해유형
- 1-4 관련 법률

2. 디지털성폭력의 원인

- 2-1 산업구조
- 2-2 사회문화적 인식
- 2-3 피해자를 향하는 시선
- 2-4 구조와 문화의 연결고리

3. 디지털성폭력 대응실전

- 3-1 불법촬영
- 3-2 유포피해
- 3-3 유포협박
- 3-4 지인피해
- 3-5 전문기관 소개

4.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

- 4-1 개인적 노력
- 4-2 사회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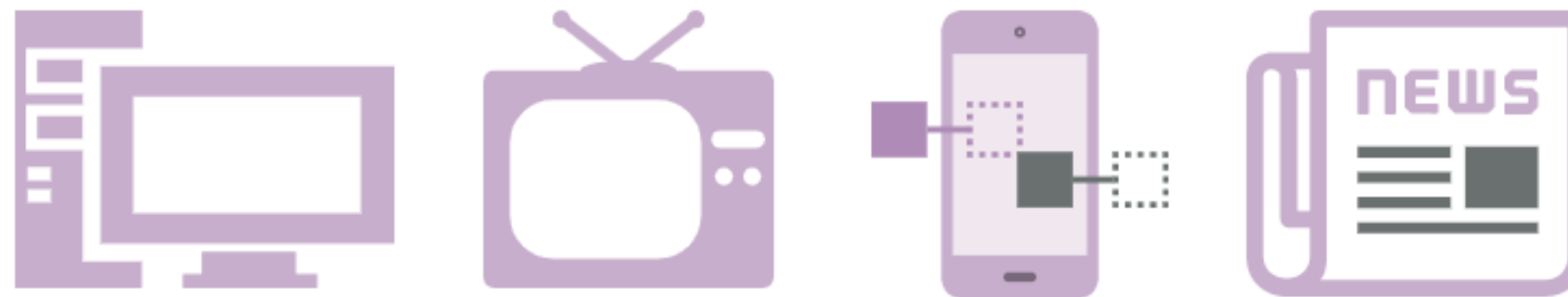


당신은
"무엇"을 찍고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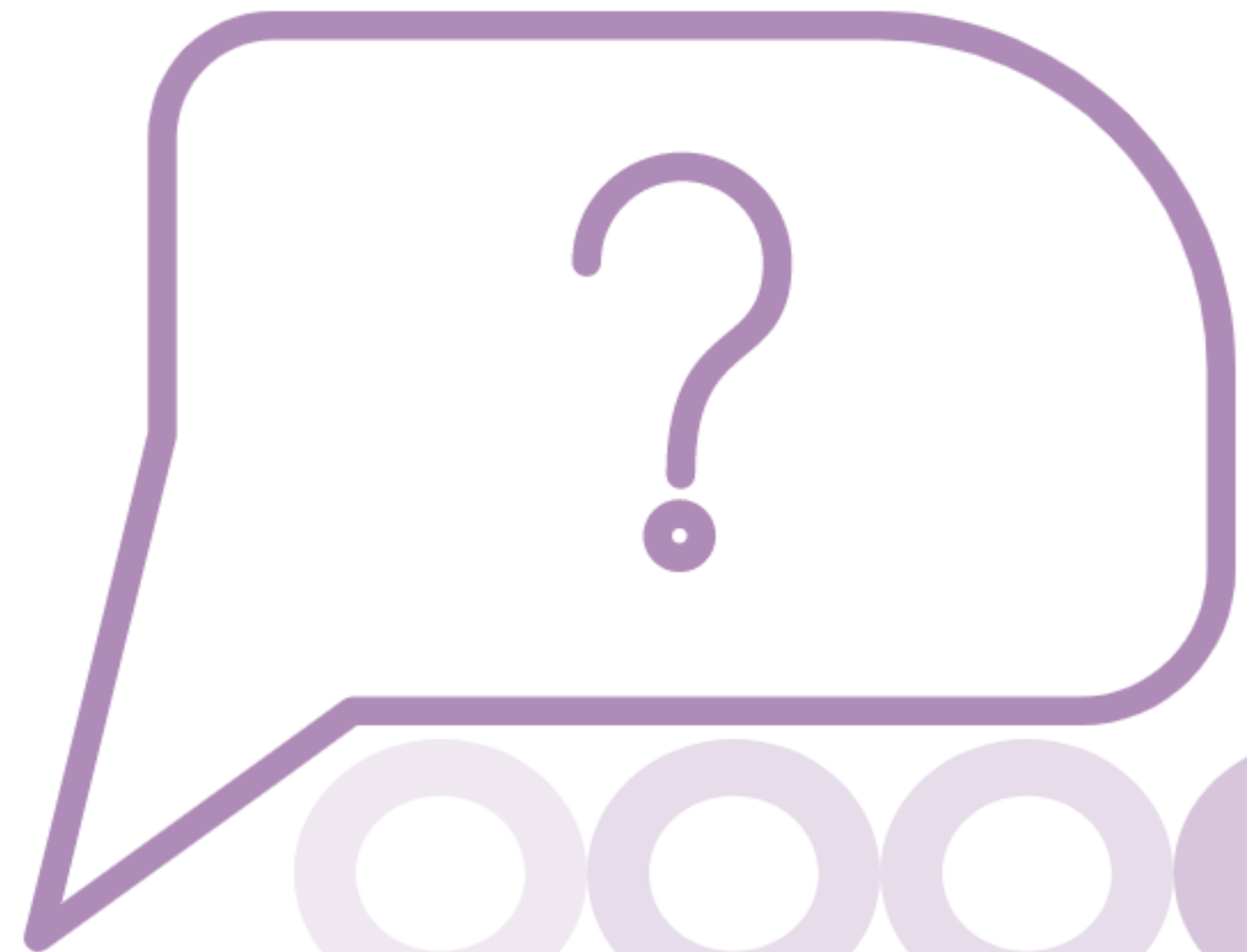
매일 아침, 일상이 되어버린 디지털성폭력





I . 디지털성폭력, "무엇" 일까요?

Digital Sexual-violence





디지털성폭력의 정의

Digital Sexual-violence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 소지하는 등의
온라인 환경, 미디어, SNS등에서의 모든 폭력을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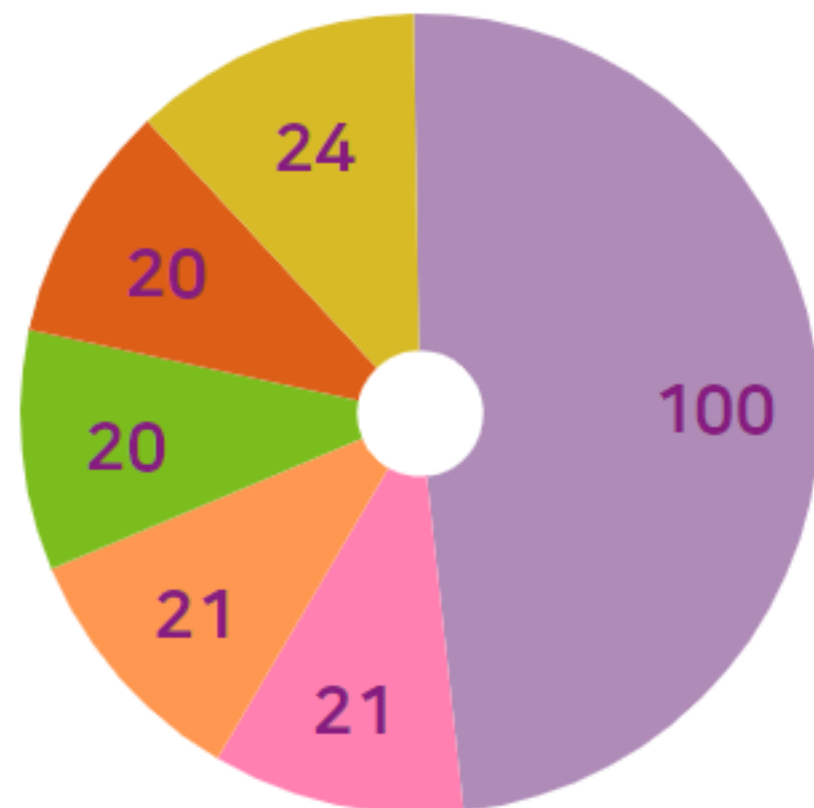


피해상담 통계

2017년 5월~12월
총206건 전수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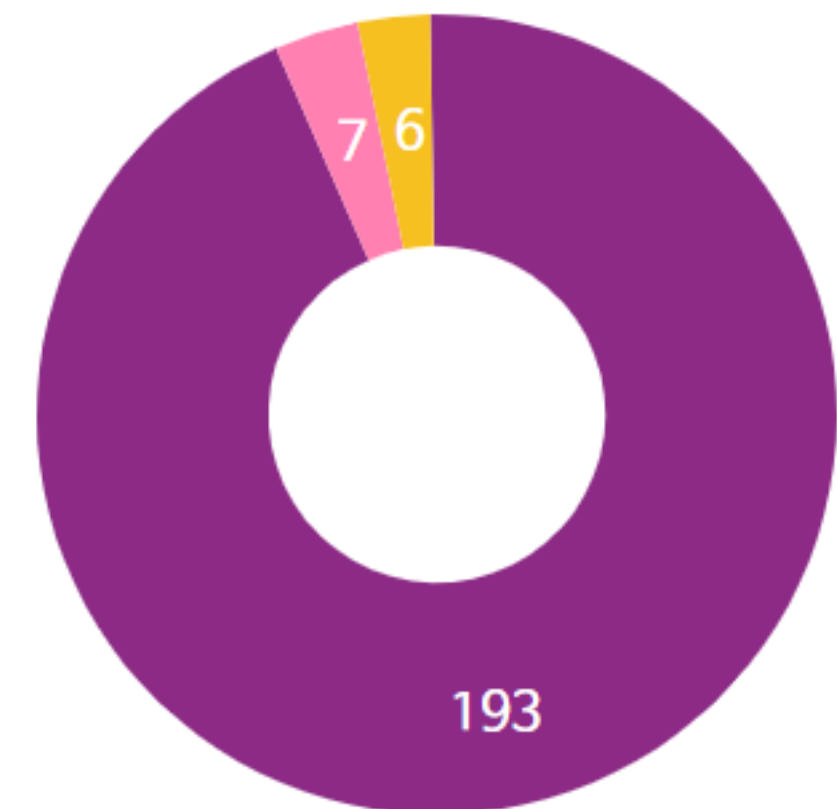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유형]



- 성적촬영물 비동의유포
- 성적 사이버불링
- 불법도촬
- 유포협박
- 불안피해
- 기타

■ 여성 ■ 남성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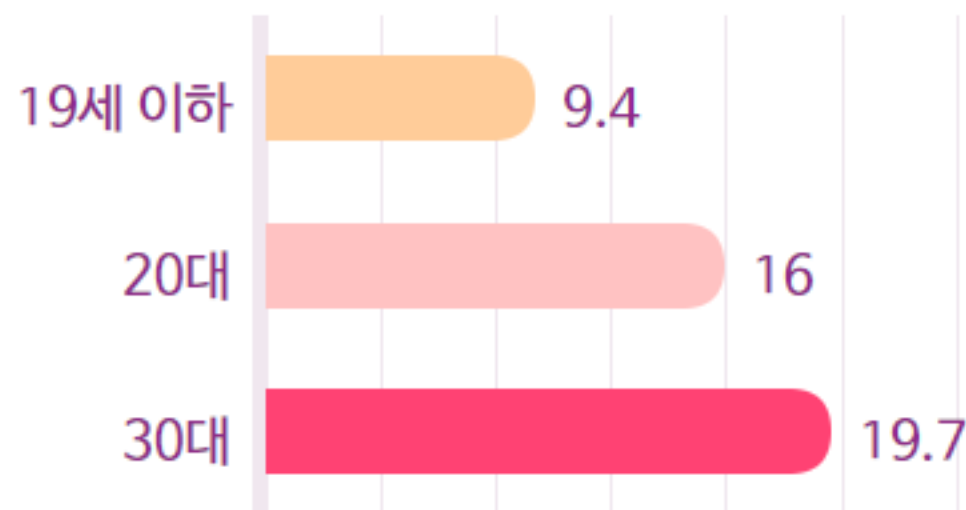


[피해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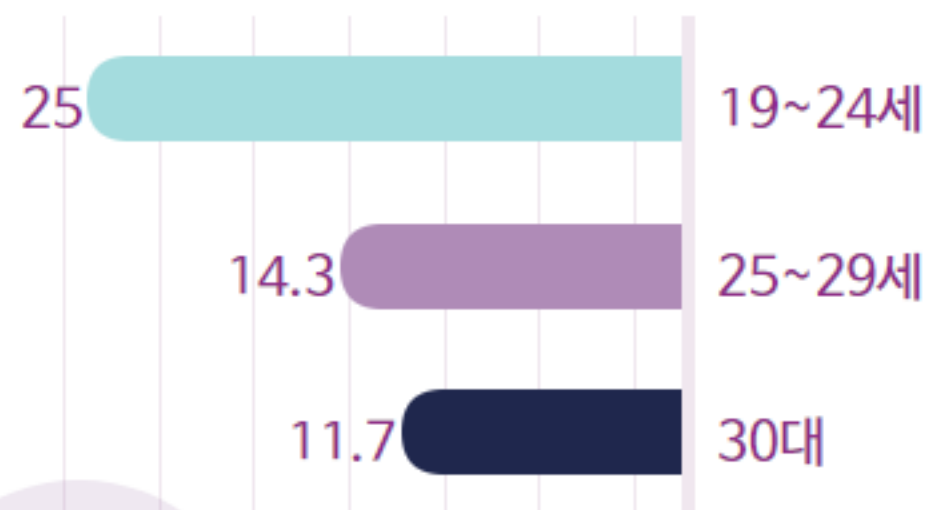


2020 성범죄백서(법부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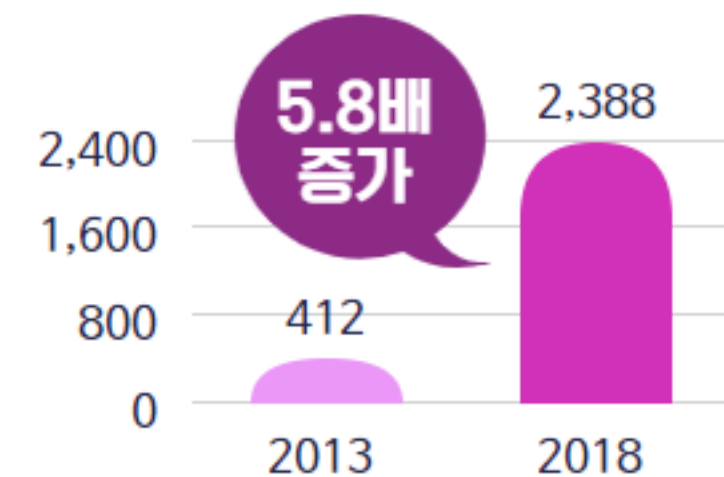
1) 가해자 연령(단위:%)



2) 피해자 연령(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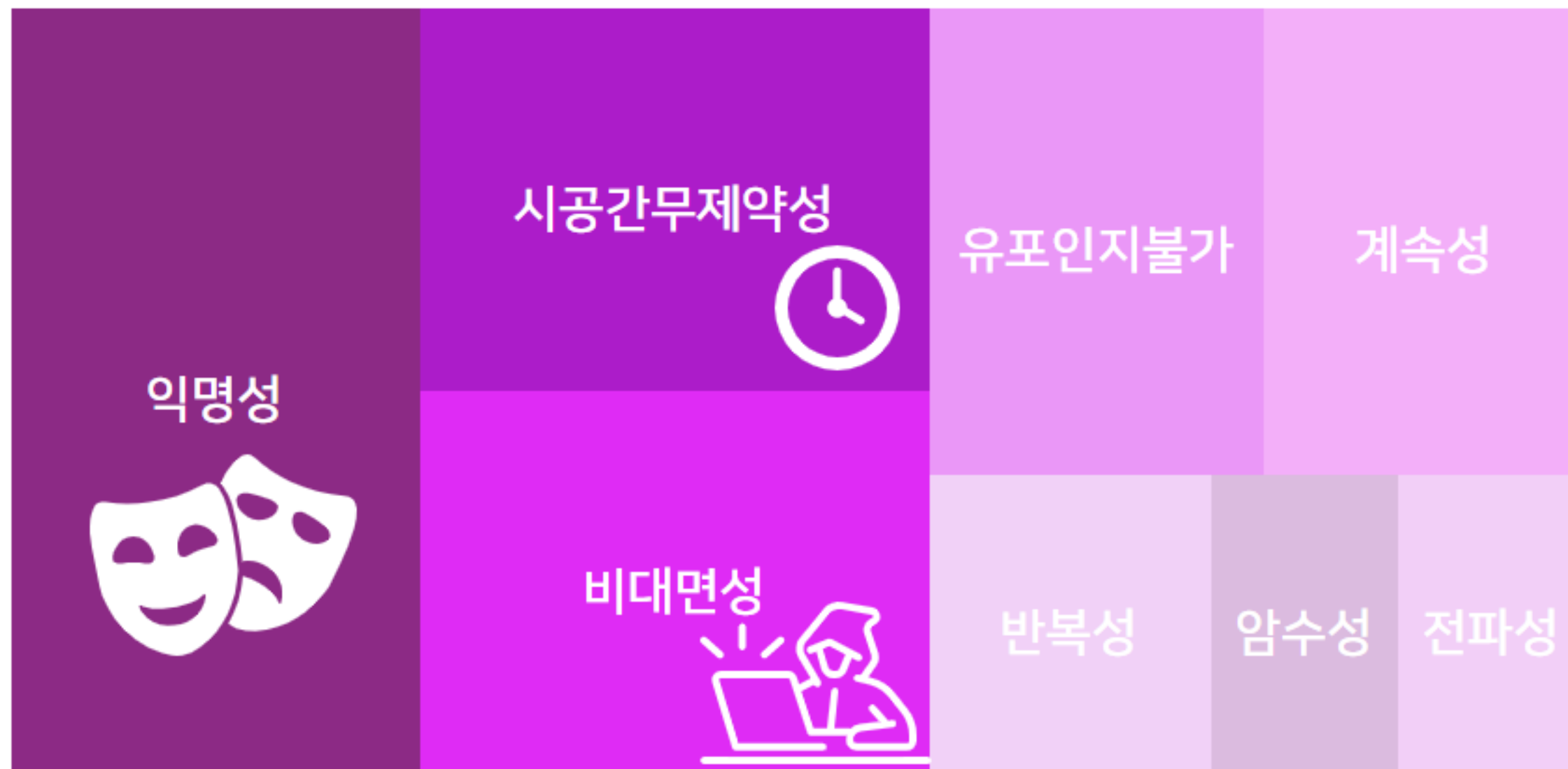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증가율과 처벌선고형



처벌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56.5%	30.3%	8.2%



디지털성폭력의 특성





디지털성폭력의 피해유형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촬영



성적괴롭힘

SNS, 온라인게임,
외모품평, 성희롱 등



온라인성착취



불안피해

전단계에서
불안과 공포감



유포피해

반복성, 무한성
지속성, 전파성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
성적 합성



협박피해

피해촬영물을
도구로 협박 발생



온라인그루밍
Online-Grooming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74조(벌칙)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청이용음란물)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신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심각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허락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징역7년
벌금5천만원**

허락없이
촬영물을
SNS에 유포하면?
**징역5년
벌금3천만원**

돈을 벌기 위해
촬영물을
유포하면?
징역3년이상

성적촬영물,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면?
징역1년이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하면?
**징역3년
벌금3천만원**

사진, 동영상을
성적합성 및 편집,
이를 반포하면?
**징역5년
벌금5천만원**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면?
**무기징역
징역5년이상**



[2020.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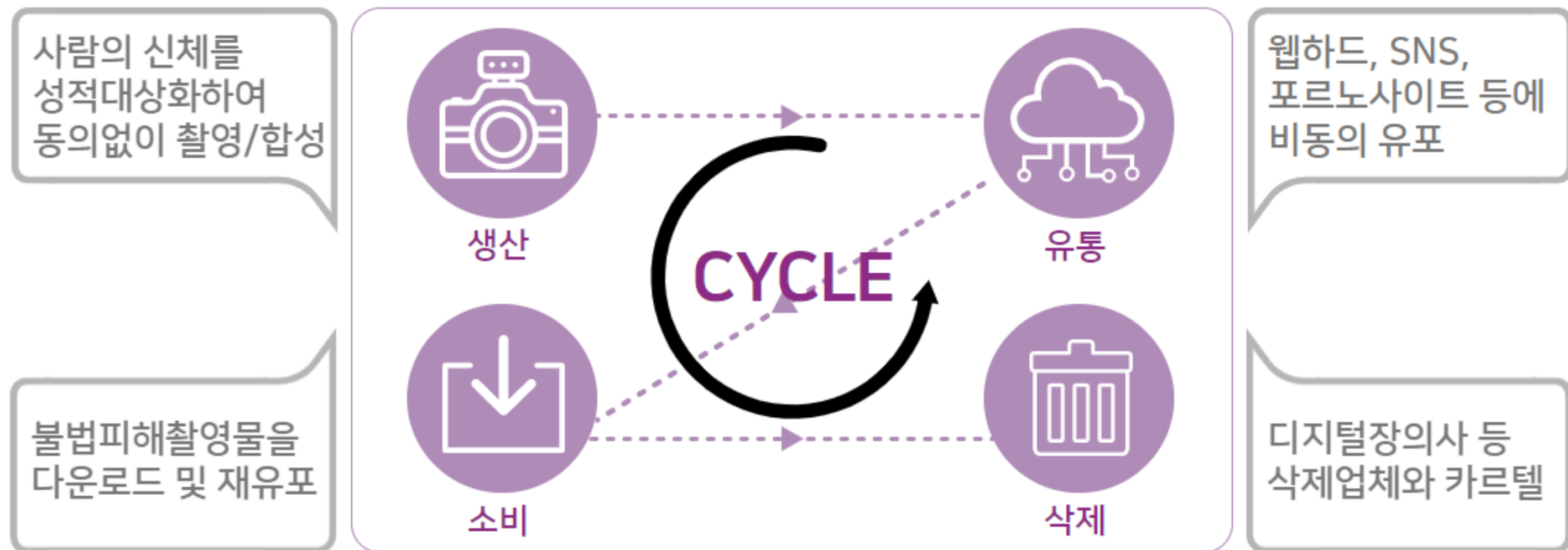


II . 디지털성폭력, "왜" 일어나는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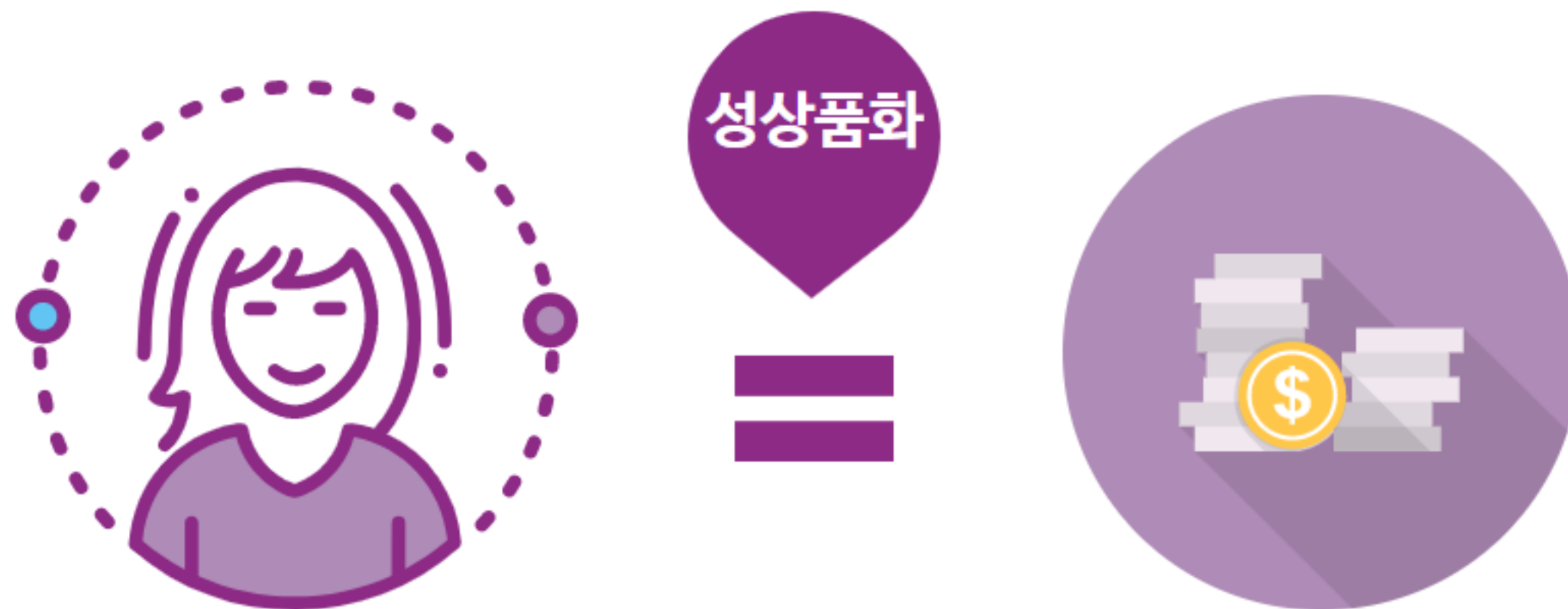


WHY 1. 디지털성폭력 산업구조 Web-hard Car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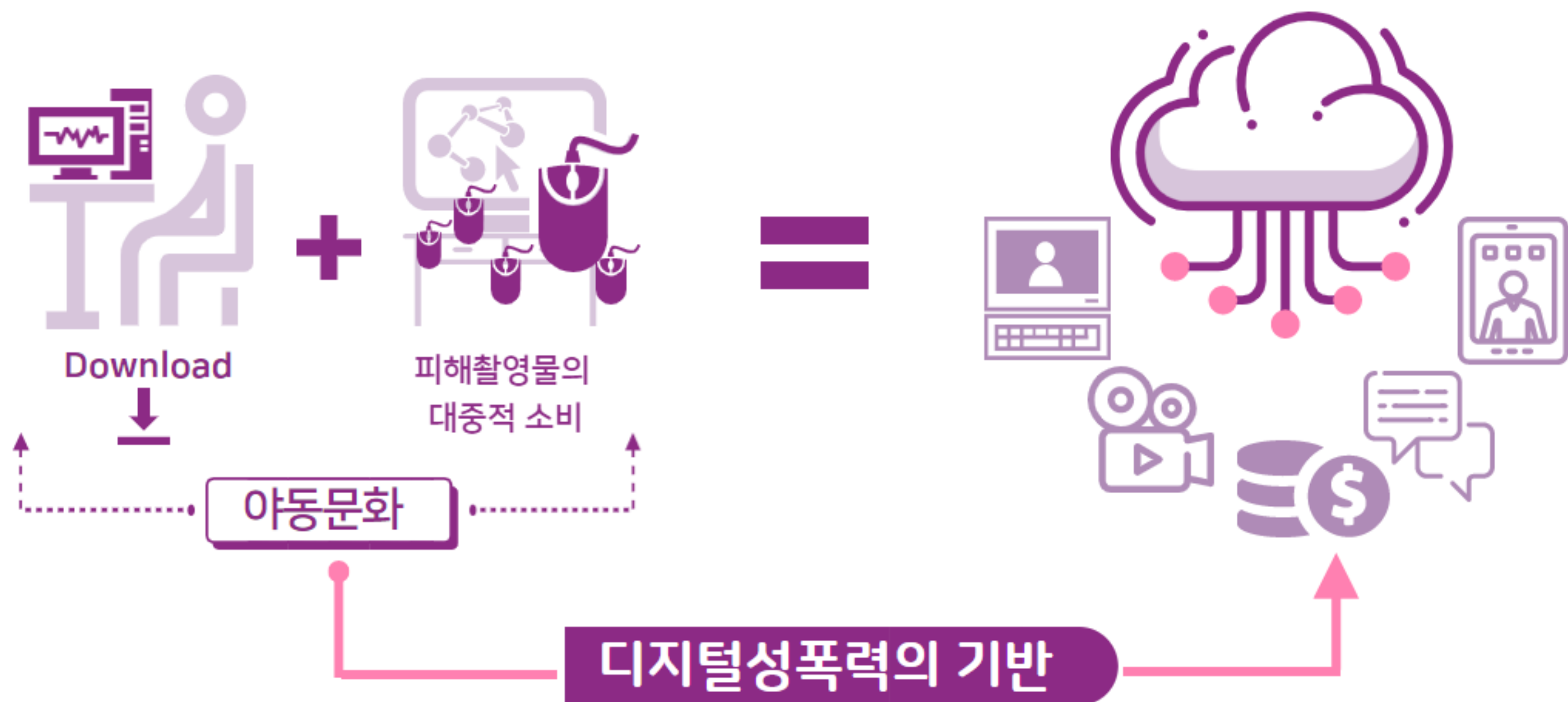
WHY 1-1. 디지털성폭력 산업구조 성상품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



WHY 2. 사회문화적 인식 야동문화





WHY 3. 피해자를 향한 사회시선

"평소에 늦게 다니고
놀이 좋아하더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이나 해!"

"저런게 찍힌걸 보면
너도 문제는 있어."

"아니 왜 좋아서 찍어놓고
이제와서 피해자래?!"

"정말 당한거 맞아?
너도 즐긴건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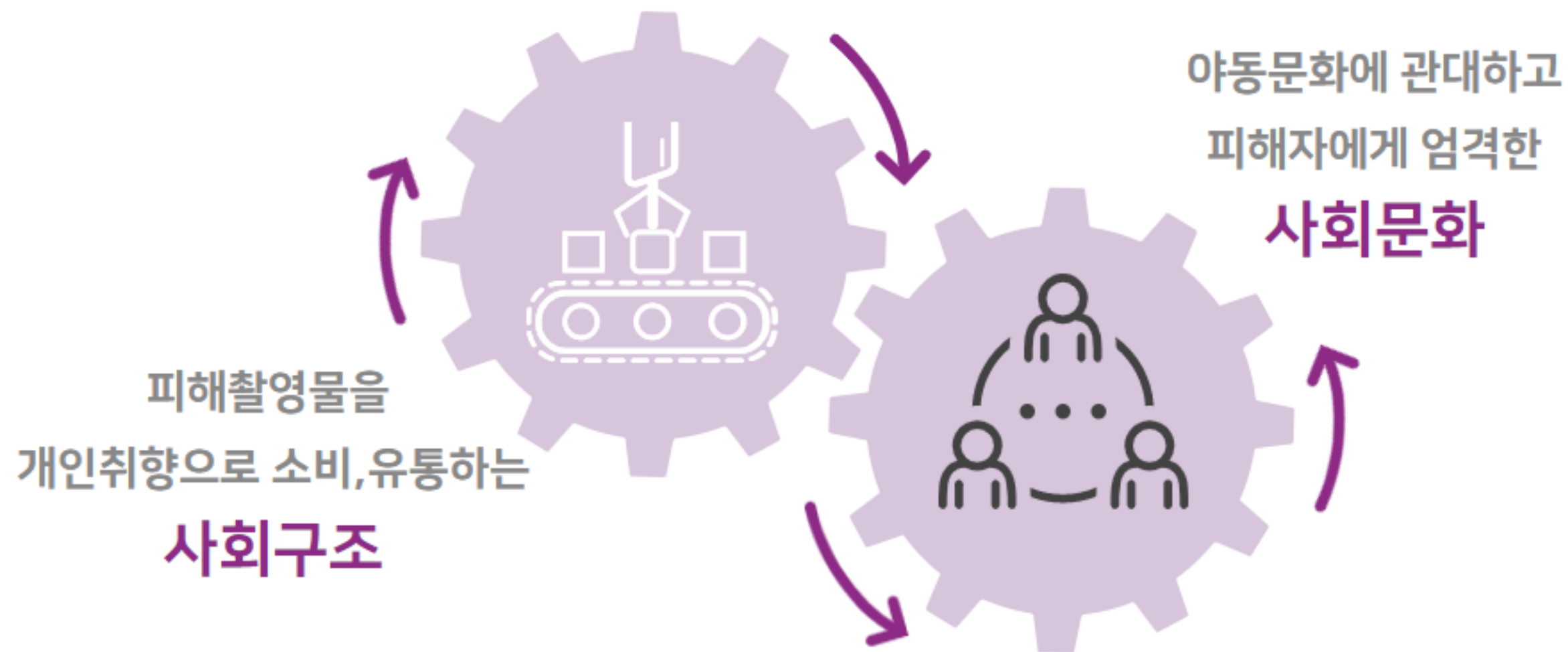
"이제 정말 어떻게할거니?
여자애가 겁도 없이!"

피해자다움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WHY 4. 구조와 문화의 연결고리





III. 디지털성폭력, 대응실전 1) 불법촬영

공중화장실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법촬영하고 있어요!



불법촬영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증거로 제출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이나 인상착의 등의
단서를 기억





III. 디지털성폭력, 대응실전 2) 유포피해

지인이 인터넷에서
제 노출사진을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유포피해

증거를 확보해 관할경찰서로 신고합니다



게시물링크, 원본영상, 캡처본, 가해자 아이디 등
유포증거 확보 후 단면인쇄해 고소장 작성



해당사이트 운영자, 삭제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





III. 디지털성폭력, 대응실전 3) 유포협박

이별을 통보했더니 저 몰래
촬영한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유포협박

증거를 확보해 관할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협박메세지, 통화내용 녹취 등 가해행위 채증
-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 지참 신고



가해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모를 경우에는 신고자의 관할경찰서로 신고





III. 디지털성폭력, 대응실전 4) 지인의 피해발견

친구의 불법촬영
피해를 발견했어요.
이야기해 주자니 제 입장도 그렇고,
어떻게 도와야할지 모르겠어요.



지인피해

본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렵지만 알려야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주변에서 회복적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알려주세요.





III. 디지털성폭력, 대응실전 5)전문기관 소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지원내용: 상담/삭제/수사

여성긴급전화(24시간)

전화상담: 지역번호+1366

채팅상담: www.women1366.kr

카카오플러스친구: women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상담시간: 평일 13:00~17:00

지원내용: 상담/삭제/수사법률/심리치료





IV.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개인적 노력



No Shoot
See
Send



No Shoot
See
Send

 디지털성폭력, 지금 당신이 멈출 수 있습니다

#나는찍지않겠습니다#나는보지않겠습니다
#나는받지도보내지도않겠습니다
#카메라이용불법촬영물근절#디지털성폭력근절을위한캠페인




스티키 스마트폰 점착패드



휴대폰 부착면






IV.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 사회적 노력





활동 1) 온라인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아동청소년 활용 워크북(2p.)을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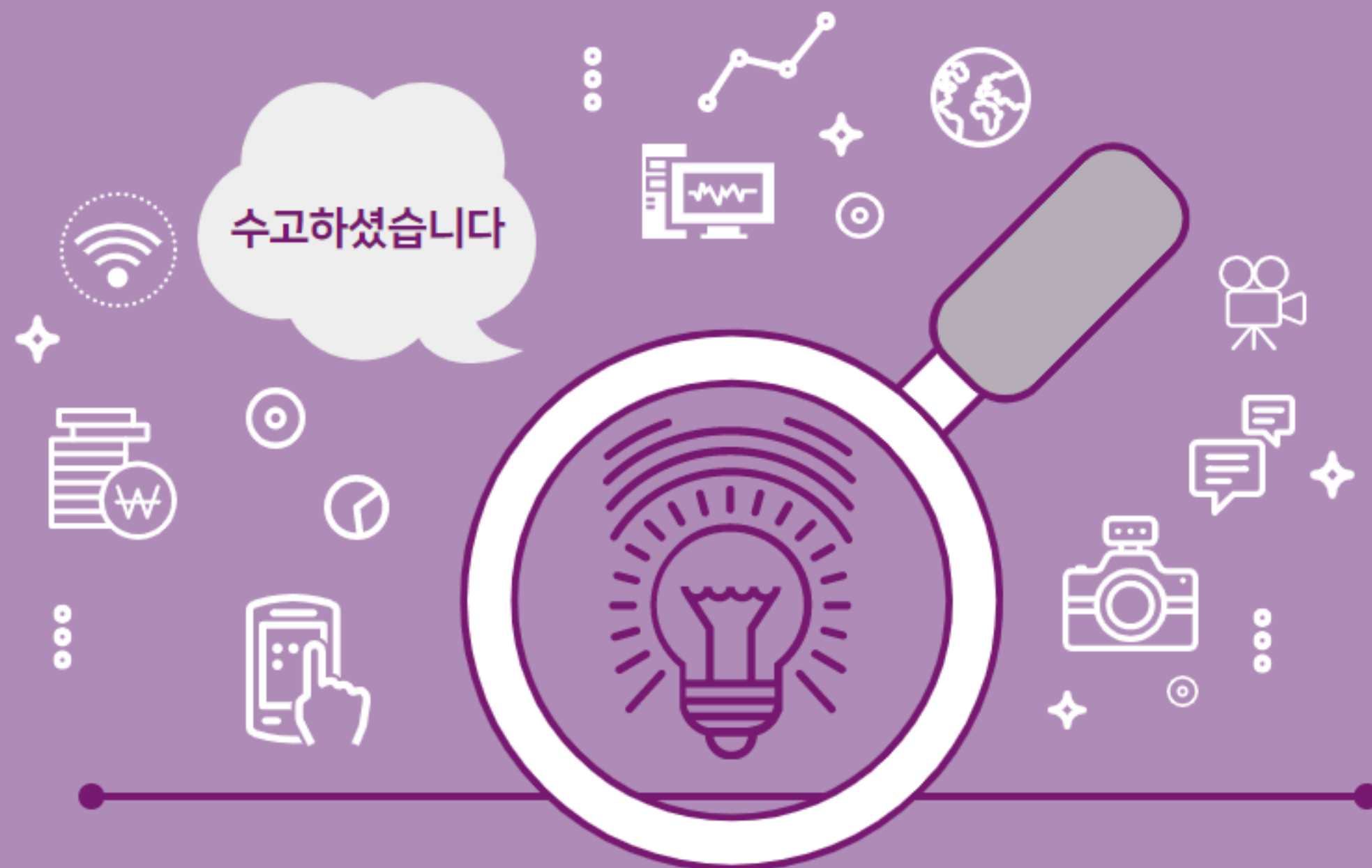
활동2) SNS 사용하면서 불쾌하거나 성적모욕감이 들었던 경험?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활동3) 우리 조직에서의 온라인에티켓 정하기





**디지털성폭력,
지금 당신이 멈출 수 있습니다!**